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L3스위치(24Port) 22대 외 6종

○ 발 주 기 관(갑) : 한전KDN(주)

○ 제조사.공급사(을) : (주)코어엣지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매되는 협약품목(<별표> 참조)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을”이 직접 또는 “을”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을”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규격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 ④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및 협약금액 등 그를 위한 협의가 “을”의 파트너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및 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의 낙찰자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별표>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의 기준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거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는 “갑”의 요청에 따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 년 06 월 22일

발 주 기 관 명 (갑) : 한전KDN(주) 대표이사 박 상 형



제조사·공급자명(을) : (주)코어엠텔네트웍스 오 흥 석



<별표>

[단위 : 원, VAT 별도]

NO	품목	제조사 또는 공급사	모델명	수량	협약 금액
1	L3스위 치	코어엣지네트웍스	C3300-24TS	22대	261,544,000원
2	L3 PoE스위 치	코어엣지네트웍스	C3300-24PS	11대	
3	L2 PoE스위 치(24P)	코어엣지네트웍스	C3100-24P	16대	
4	L2 PoE스위 치(8P)	코어엣지네트웍스	C3100-8P	110대	